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9 선고 2024가합31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E 사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026 가압류 결정의 원인이 된 계약을, 피고 C과 E 사이에 같은 법원 2021카단50068 가압류 결정의 원인이 된 계약을, 피고 D과 E 사이에 같은 법원 2021카합50027 가압류 결정의 원인이 된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026 가압류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법원 2021카단50068 가압류등기의, 피고 D은 같은 법원 2021카합50027 가압류등기의 각 집행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영화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12. 15.부터 F에서 근무하다가 2020. 2. 29.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친 회사 내지 사람들이다.

나. 공동제작사업계약의 체결

F, G 유한회사(이하 'G사'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I(이하 'I'라 한다), 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은 2018. 2. 28. F가 2020. 5. 31.까지 방송용 애니메이션 'K'를 제작하고, G사는 제작비 및 수익을 정산하며, H, I, J는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제작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제작사업계약 제7조, 제20조에서는 F가 I와 J의 일부 투자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I와 J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F, G사, H, I, J는 2020. 8. 27. 위 공동제작사업계약에서 정한 제작기간을 2021. 6. 30.까지로 연장하고, G사, H, I, J는 F가 연장된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F로부터 제출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험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동제작사업계약 및 부속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다. 이행지급보증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8. 2. 26. F와 사이에, 원고가 유효기간 2018. 2. 26.부터 2019. 2. 26.까지, 거래한도액 1,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F의 채무를 보증하고, F는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원금 및 상환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F의 대표이사 L과 함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F의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거래한도액)

약정인(이하 ‘F’를 말한다)이 조합(이하 ‘원고’를 말한다)으로부터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중략)

1. 한도거래보증채무약정금액: 약정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신청하여 각종 보증을 받기로 함 (1,560,000,000원)

제3조(약정의 유효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019. 2. 26.까지 약정인이 조합과 거래한 보증의 보증기한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7조(채무의 부담 및 배상 등)

약정인은 제2조의 거래한도액과 제3조의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약정인은 조합이 보증한 금액을 피공제자(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조합이 정한 상환이자를 지체 없이 원고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협조, 통지 및 신고의무)

약정인은 인감, 상호, 대표자 또는 연대보증인, 주소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협조, 통지 또는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5조(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어음 및 각종 업무거래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어도 약정인이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자격을 상실한 후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까지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계속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이 약정서의 약정기한 경과 후에 약정인 또는 피공제자(보증채권자)의 요청으로 이 약정서에 의하여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보증서 발급 포함) 피공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원고와 F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거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2018. 2. 28. 보증채권자를 J, 보증기간을 2018. 2. 28.부터 2020. 8. 31.까지, 보증금액을 348,000,000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계약을, 2018. 3. 12. 보증채권자를 I, 보증기간을 2018. 2. 28.부터 2020. 8. 31.까지, 보증금액을 156,600,000원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F는 2020. 8. 28. 이 사건 제작계약에서 정한 제작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 체결에 따라 위 각 지급보증계약의 각 보증기간을 2021. 9. 30.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지급보증계약 이행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이행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I, J에 교부하였고, I, J는 F에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2021. 3. 31.경 F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해지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21. 6. 3. I에 333,900,000원, 2021. 6. 11. J에 420,000,000원, 2021. 6. 30. J에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이 중 일부는 L만 연대보증한 F와의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마. 피고들의 가압류

피고 B은 2021. 1. 13. E에 대한 2020. 9. 25.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222,586,272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1.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026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21. 1. 13. E에 대한 2020. 1. 6.자 차용증에 기한 167,773,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단50068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21. 1. 13. E에 대한 2019. 2. 25.자 차용증에 기한 328,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027호로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달 20.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가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 J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F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E에 대하여 461,10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중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과 L만 연대보증한 별도의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체결된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E과 허위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피고들과 E 사이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I, J에게 지급한 보증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상환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E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I, J에게 지급한 보증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상환이자 46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은 근보증에 해당하는데, E이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할 당시 보증채무 최고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이에 관한 E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무효이다.

(2)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은 보증기간을 2019. 2. 26.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는 위 보증기간 경과 후로서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합의해지된 2021. 3. 31. 또는 원고가 I, J에 보증금을 지급한 2021. 6.경 발생하였으므로, E은 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제3조 단서는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E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E은 2020. 2. 29. F에서 퇴직하였고, 2020.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그 후에 발생한 F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E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보증기간 경과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20. 2. 29. F에서 퇴사하고, 2020.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칙상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F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E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F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F와 2018. 2.경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 및 2020. 7. 3. 추가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20. 8. 28. 기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과 계약이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이 원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I와 J에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E에게 보증기간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다) ①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의 약정심사조서에 E과 F의 관계가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E은 F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고 F에서 단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9. 5. 2.자 한도거래약정 체결시 E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은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2020. 7. 3.자 한도거래약정의 경우 당시 E이 F에서 퇴사한 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체결 당시 F의 부사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일부터 약 2년 후 F에서 퇴사하여 그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했던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 E이 위와 같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계속적 거래에서 확정된 주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인다.

(바)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357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3.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E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나2001079)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에도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써(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가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그 각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의 원인계약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에 있어서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바, E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대여하고 E이 차용하였다는 계약으로, 이를 들어 E의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일 뿐이어서 가압류 설정행위 자체가 재산처분행위라거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을 발생시킨 원인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윤소희, 판사 임현수

별지